

# 2024년 전기차 화재예방형 충전기 보조사업 모집 공고

2024년도 전기차 화재예방형 충전기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 7. 8.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4년 전기차 화재예방형 충전기 보조사업
  - (화재예방형 충전기) 전기차 화재 예방에 기여를 목적으로 충전 중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차량정보, 누적주행거리, SOH, SOC, 전류, 전압, 온도 등)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한 충전기로 [별표9]\*의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충전기
    - \* 공고문 하단의 [별표9] 참고
- (사업예산) 800억원
- (신청기간) 2024. 7.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신청자가 하는 직접신청과 사업수행기관이 하는 대행신청 방법이 있으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포털에서 신청

## 2. 보조금 지원대상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 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

※ 공용충전시설이란 사용자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

○ 다만, 공동주택, 학교시설 등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소상공인이 영업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화물 운송사업자) 전기차를 신규 구매('24년 7월 8일 이후 등록 차량에 한함)하고 충전기 설치 부지와 주차면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한되더라도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시 지원 가능

## 3. 보조금 지원기준

○ (지원수량) 2024년 완속 공용 충전시설 설치수량 산정기준

구 분	설치가능 수량
1) 해당 장소에 기 설치된 충전기가 없는 경우	주차면수 × 5%
2) 해당 장소에 기 설치된 충전기가 있는 경우	설치가능 수량 - 기 설치된 충전기 수

※ 설치가능 수량은 계산 후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처리한다.

※ 전력분배형 충전기는 충전 케이블 수를 곱한 수만큼, 과금형콘센트는 4를 곱한 수만큼 지원 가능하다.

※ 기 설치된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는 1기로 산정하고, 키오스크 충전기는 2기당 1기, 전력분배형 충전기는 충전 케이블 수량과 무관하게 1기, 과금형콘센트는 4기당 1기로 산정한다. 단, 기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자가 소유자 또는 특정 차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충전기는 기 설치 수량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의 영업용 전기차 화물·택시 충전시설은 수요자 기준 최대 1기까지만 지원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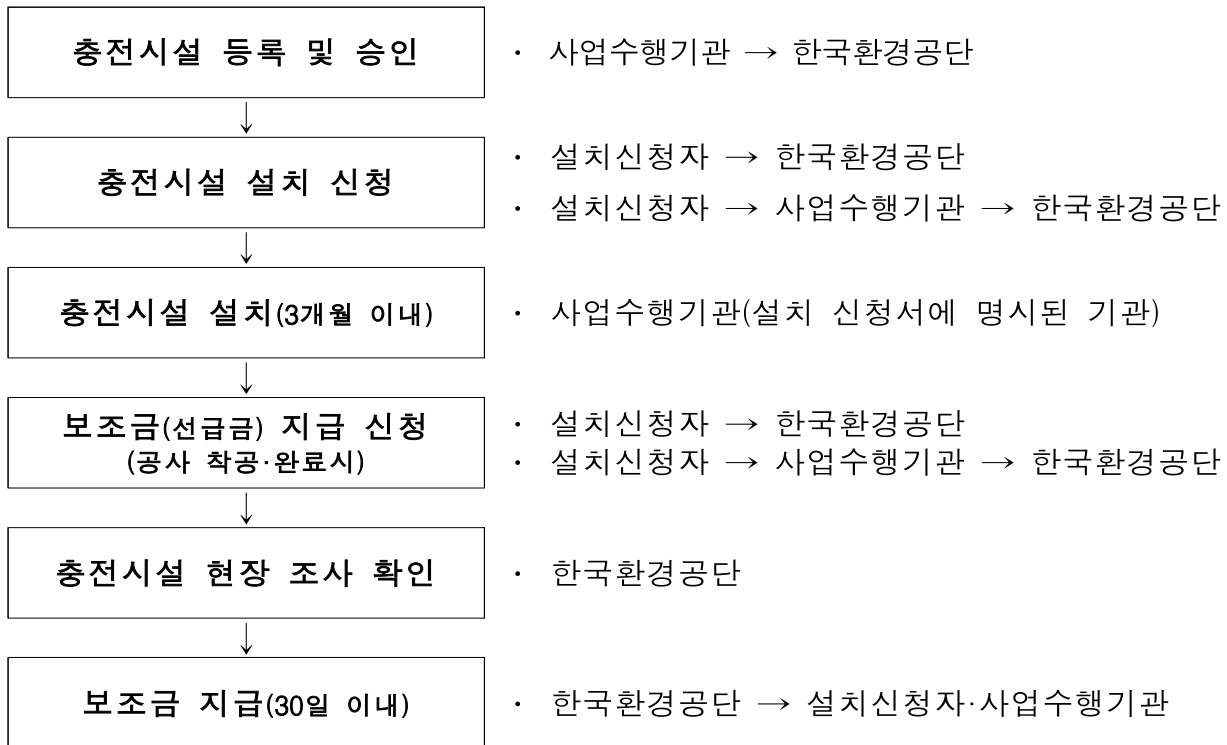
○ (보조금 지원단가)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차등 지원

<2024년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충전기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만원)
① 30kW 이상 충전기	500(1기), 400(2기), 350(3기 이상)
② 11kW 이상 충전기	160(1기), 140(2기~5기), 120(6기 이상)
③ 7kW 이상 충전기	140(1기), 120(2기~5기), 100(6기 이상)
④ 3kW 이상 충전기	50(1기), 45(2기~5기), 40(6기 이상)
⑤ 전력분배형 충전기	①~③ 용량별 지원단가에 케이블 1기당 10만원씩 추가 지원
⑥ 키오스크 충전기(7kW)	140(2기)
과금형콘센트	35(1기)
화재예방형 충전기	충전기(①~④) 보조금 지원단가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장치 비용” <b>최대 40만원 추가 지원</b>

- ※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충전시설 설치 신청자 등이 부담함
- ※ 키오스크 형식의 충전기(케이블이 있는 충전기)는 기본 2기(보조금 140만원)를 지원하며, 1기 추가 시 60만원을 추가 지원함
- ※ 전력분배형 충전기는 본체에 추가되는 케이블 1기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하며, 동시에 모든 케이블에서 충전시 합산한 총 용량에 해당하는 충전기 보조금 지원(단, 동시 충전시 최소 충전용량은 3kW를 초과할 것)
- ※ 과금형콘센트의 경우 기존 전기배선을 활용 시에도 지원하며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충전정보의 교환, 전력 분배 또는 차단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동일 장소에 설치된 과금형콘센트는 모두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
- ※ 소상공인이 영업용 전기차(화물, 택시 등) 충전을 위한 충전기를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④ 단가의 70%를 지원함(ex: 11kW 112만원, 7kW 98만원)

## 4. 보조사업 추진절차



## 5. 충전시설 설치신청

- (지원제품)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수집 및 제어를 위한 ISO15118 EVCC-SECC 통신프로토콜』 시험성적서와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수집 및 제어를위한 OCPP1.6 CP-CSMS 통신 프로토콜』 시험성적서\*를 득한 제품

\* 화재예방형 충전기와 CSMS간 정보교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 - (시험기관 문의처)

구분	시험기관	연락처
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차충전기술센터	031-428-5603, 3740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디지털산업본부	02-860-1532, 1474
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미래모빌리티팀	031-679-9571
4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품질인증센터	02-6257-3648

## ○ (제품 확인)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포털 접속 → 상단 메뉴의 [구매 및 지원] 선택 → [화재예방형 충전기 제품안내] 선택 후 사업수행기관과 제품 확인

-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전 현장 컨설팅 진행 후 신청서 작성·접수

※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서 설치신청 및 보조금 지급신청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 ○ (신청서류)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등

※ 제출서류는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참고

## ○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포털 →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시스템

## 6.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관은 설치신청 및 지급신청 단계에서 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현장에 설치된 충전기 사양이 다를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임

○ 사업수행기관은 설치신청서가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되어 승인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충전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되지 않도록 신청자(설치 승낙자)와 사전 현장 컨설팅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 시 지침 [별표3, 4]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친환경모빌리티처 전기차 보조사업 운영TF(1899-3638)

[별표9]

화재예방형 충전기 규격

구분	사양
입력	- 상 선식 : 단상 - 정격전압 : AC 220V ± 10% - 정격전류 : 32A(7kW) / 50A(11kW) - 정격주파수 : 60Hz±1%
출력	- 상 선식 : 단상 - 전압범위 : AC 220V ± 10% - 전류(전력범위) : 32A(7kW) / 50A(11kW) - 정격주파수 : 60Hz±1%
충전방식	C-Type
충전규격	Type1 (SAE J1772)
차량통신 프로토콜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수집 및 제어를 위한 통신 프로토콜」
서버연동 프로토콜	OCPP1.6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수집 및 제어를 위한 통신 프로토콜」)
IP등급	IP44
디스플레이	형식승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양
사용온도	-25℃ ~ 40℃
인증	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득한 충전기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형식승인기 관에서 형식승인 또는 인증을 득한 충전기
성적서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수집 및 제어를 위한 통신 프로토콜」 시험 성적서
캐노피	옥외 설치 시 강우, 강설에 대비하여 캐노피 설치
기타	생산물 책임 보험 가입

- 비고 1) 위 사양 외에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사양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  
 2) 정격전류의 경우 출력에 맞추어 변경이 가능  
 3) 통신 프로토콜은 암호화 등 기존 프로토콜에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